

『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
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12월 17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12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12월 23일

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생활위생과장 황 정 구

나. 제안이유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·목욕장·쇼핑센터·매장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 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·운영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(안 제2조).
-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(안 제3조).
- 과태료의 처분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제1항 내지 제6항).
-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 및 별표1).

-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.
(안 제8조).
-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및 지급의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9조, 제15조).
- 신고자 · 신고방법 · 신고서 처리절차 ·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
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0조 · 제11조, 제13조, 제14조).
-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6조).

라. 참고사항
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
-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: 환경부
-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
: 환경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, 1회용품의 무분별한
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,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,
음식점 · 목욕장 · 쇼핑센터 · 매장 등, 대중 이용업소에 대하여 1회용품의
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, 위반사업장에 대한
경각심 및 시민참여를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· 운영하기
위한 것으로서,
- 주요 내용으로는,
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,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
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
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른
신고자 · 신고방법 · 신고서 처리절차 ·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
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, 본 조문 18조, 부칙 및 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,
- 조례안 제정 준칙"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
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